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 물품등의 통신판매중개
금지 조치 권고·명령 등〉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31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구 현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 물품등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 권고·명령 등	2
2) 통신판매중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30.
3. 회 부 일 : 2026. 5.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금지 등의 조치 대상은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만 한정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는 규정이 미비하여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판매 금지 등의 조치 권고 및 명령의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하여 온라인에서 위해물품의 통신판매중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등).

Ⅲ. 검토의견

1)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 물품등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 권고·명령 등

□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물품등(이하 “위해 물품등”이라 함)을 자진하여 통신판매중개 금지 및 그밖에 필요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4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 물품등을 통신판매중개 금지 및 그밖에 필요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2항·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 (생략)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시험·검사의 결과 그 물품등이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요건에 해당하	② ----- ----- ----- ----- ----- ----- -----

현행	개정안
는 경우에는 <u>사업자에게</u>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u>사업자</u>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u>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u>(「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u>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u>----- ----- ----- -----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u>----- --. 1. <u>사업자</u>: 해당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 <u>통신판매중개업자</u>: 해당 물품등의 통신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행	개정안
제49조(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u>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u> 를 권고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u>사업자</u> 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50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u>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u> 제49조(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① ----- ----- ----- ----- ----- <u>-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u> 1. 사업자: 해당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 통신판매중개업자: 해당 물품등의 통신판매중개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② ----- ----- <u>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현행	개정안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사업자</u>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④ (생략)	<u>밖의 필요한 조치</u> ② -----<u>사업자</u>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의 거래규모의 확대¹⁾로 소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은 신속한 온라인 위해제품 차

1) 17조 9,138억원(2023. 4.) → 21조 1,506억원(2024. 4.) → 21조 9,424억원(2025. 4.) → 24조 1,280억원(2026. 4.)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3. 4. ~ 2026. 4. 온라인 쇼핑 동향)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

(경상금액, 억원, %)

구분	2023년 4월	2024년 4월	2025년 4월	2026년 4월p*
○ 소매판매액(A)	522,198	526,893	533,624	558,247
○ 온라인쇼핑 거래액	179,138	211,506	219,424	241,280
-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B)*	127,952	144,470	149,776	168,535
○ 비 중(B/A)	24.5	27.4	28.1	30.2

* 잠정치(p)로 수정될 수 있음.

**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이쿠폰서비스,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거래액」 제외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4월 ~ 2026년 4월 온라인 쇼핑 동향 재구성)

단을 위해 국내 오픈마켓 4곳(네이버, 11번가, 지마켓, 쿠팡), 중고거래 플랫폼 4곳(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 해외플랫폼 2곳(알리익스프레스, 테무)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여 유통 중인 위해제품을 탐지하고 위해요소를 확인한 후 각 플랫폼별 핫라인(전담자 지정)을 통해 신속한 차단을 요청하여 2025년 기준 2,135건을 조치한 바 있음²⁾.

□ 그러나 현행법은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해 물품등에 대하여 결함정보 보고 및 자진수거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사업자는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의무가 있고(제47조³⁾), 중앙행정기관의

2)

<최근 3년간 온라인플랫폼 조치 실적>

(단위: 건)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오픈마켓	1,119	977	1,258	3,354
중고거래플랫폼	18	10	96	124
해외플랫폼	-	852	781	1,633
합 계	1,137	1,839	2,135	5,111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처리건수 기준

(자료: 한국소비자원)

3)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48조에 따라 해당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수거·파기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장은 사업자에게 위해 물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제49조 및 제50조4),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84조제1항5)).

2.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과 동일한 물품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파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수거·파기등

나. 자발적으로 한 수거·파기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시험·검사의 결과 그 물품등이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2. 물품에 성명·상호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결함의 범위,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49조(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8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사업자에게 위해 물품등에 대해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자진수거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제48조6).

□ 이에 따라 위해성이 확인된 물품등에 대해 행정기관이 판매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등을 명하더라도 온라인 플랫폼상 게시물 삭제, 검색 차단, 판매중개 중단 등의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 물품등을 자진하여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해외직구, 오픈마켓, 개인 간 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판매사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해외 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판매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만으로는 위해 물품등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에서 위해 물품등의 유통

1. 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6)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통을 신속히 차단하여 위해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 또한, 「제품안전기본법」⁷⁾은 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 제품에 대하여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제품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유사한 규정이 없어,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해 물품등의 유통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유럽연합의 일반제품안전규정(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⁸⁾에 따르면 시장감시당국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운

7)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조·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EU) 2023/988(GPSR)

CHAPTER IV PROVIDERS OF ONLINE MARKETPLACES

Article 22 Specific obligations of providers of online marketplaces related to product safety

4. As regards powers conferred by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Regulation (EU) 2019/1020, Member States shall confer on their market surveillance authorities the necessary power, as regards specific content referring to an offer of a dangerous product, to issue an order requiring the providers of online marketplaces to remove such content from their online interface, to disable access to it or to display an explicit warning. Such orders shall be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minimum conditions set out in Article 9(2) of Regulation (EU) 2022/2065.

Providers of online marketplaces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receive

영자에게 위해제품과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 접근 차단 또는 소비자 경고 표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한 논의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조·판매사업자와 달리 위해 물품등을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는 자라는 점에서 그 책임은 플랫폼 운영자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정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이 규정하는 “통신판매중개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조치의 범위를 게시물 삭제, 검색 차단 등 플랫폼 운영자로서 이행 가능한 조치로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규제

and process orders issued pursuant to this paragraph and they shall act without undue delay, and in any event within two working days from receipt of the order. They shall inform the issuing market surveillance authority of the effect given to the order by electronic means using the contact details of the market surveillance authority published in the Safety Gate Portal.

제IV장 온라인마켓제공자

제22조(제품안전과 관련된 온라인마켓제공자의 구체적인 의무)

4. 규정(EU) 제2019/1020호 제14조에 따라 부여된 권한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위험 제품을 판매한다고 말하는 특정 내용에 관하여 이를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삭제 또는 차단하거나 명시적인 경고를 표시하도록 온라인 마켓 제공자에게 명령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자국의 시장감시당국에 부여한다. 이러한 명령은 규정(EU) 제2022/2065호 제9조(2)에 규정된 최소한의 조건에 따라 내려진다.

온라인 마켓 제공자는 이 항에 따라 내려진 명령을 받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부당한 지체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명령을 받은 날부터 2근무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다. 온라인 마켓 제공자는 안전관 문포털에 공개되어 있는 시장감시당국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전자적 수단을 통해 명령에 따른 효과를 시장감시당국에 알린다.

(자료: 일반 제품 안전 등에 관한 규정(EU) 제2023/988호, 국회도서관, 2024)

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통신판매중개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구체적 조치 권고, 명령을 받은 이후 신속히 삭제·차단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고, 책임 범위 역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과 한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⁹⁾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¹⁰⁾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면책을 인정하고 있음.

넷째, 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별도로 규정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제2214223호)¹¹⁾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

9) 한국온라인쇼핑협회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제2214223호)

제19조(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이버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재화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직접 재화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해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에게 제공하고 위해 재화 등의 유통·판매 차단 등의 관련 조치를 요청할 것

2. 중앙행정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이 위해 재화 등의 판매 차단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위해 재화 등의 판매를 의뢰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취한 관련 조치 현황을

어 있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업자와 달리 위해 우려 제품을 소유·판매하는 자가 아니므로 제품 삭제 등의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 동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의 금지’의 의미 및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 집행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중앙행정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할 것

3.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자안전 관련 분쟁이나 불만 등을 접수·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 것
 4. 사이버몰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소비자안전 관련 분쟁이나 불만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에 고지할 것
 5. 소비자로부터 소비자안전 관련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 그 원인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알릴 것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통신판매중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 개정안은 위해 물품등의 통신판매중개 금지 명령(안 제50조)을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4조제1항제1호, 제86조제1항제1호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u>자</u> 2. 3. (생략) ② ③ (생략)	제84조(벌칙) ① ----- ----- ----- -----. 1. ----- ----- <u>사업자</u>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 (생략)	제86조(과태료)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u>을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84조는 사업자가 제50조에 따른 수거·판매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 금지명령(안 제50조)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 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해물품을 직접 제조·판매한 사업자와 단순히 판매를 중개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정도를 구분하여 차등적인 제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다만,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 규모와 소비자 피해의 확산 가능성, 해외입법례¹²⁾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수준만으로 실효적인 규제가 어려워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2)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은 2020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서비스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된 법안으로, 2022. 7. 25.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 11. 25. 유럽연합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발효 및 집행되었으며, 2023. 8. 25.부터 유럽연합 전역에서 시행됨. (EU 디지털서비스법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2024. 1.)

Article 74 Fines

1. In the decision referred to in Article 73, the Commission may impose on the provider of the very large online platform or of the 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 concerned fines not exceeding 6% of its total worldwide annual turnover in the preceding financial year where it finds that the provider,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a) infring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제74조 과징금

1. 집행위원회는 관련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또는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의 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제73조의 결정에서 위 제공자에게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6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이 규정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자료: 국회도서관)

문 의 처
02)6788-5115